배달앱종사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앱종사자]

이 콘텐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앱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련 정책 및 법령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계약"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서비스 약관을 마련하는 등 배달앱종사자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종사자 1
1. 부릉부릉! 배달 시작하기 4
1.1. 배달앱종사자란? 4
1.1.1.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4
2. 배달 준비하기 11
2.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11
2.1.1. 고용보험 가입하기 11
2.1.2. 산재보험 가입하기 18
3. 배달하기 22
3.1. 안전운행하기 22
3.1.1.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22
3.1.2. 안전운행을 위한 배달앱종사자의 노력 28
3.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
3.2.1.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30
4. 배달 종료 및 분쟁해결 33
4.1.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3
4.1.1. 실업급여 받기 33
4.2. 각종 분쟁 해결하기 37
4.2.1.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37
4.2.2. 배달앱종사자의 권리구제 40

1. 부릉부릉! 배달 시작하기

1.1. 배달앱종사자란?

1.1.1.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고용보험법」 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콘텐츠는 향후 배달기사가 포함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새로운 노동의 형태

"플랫폼"이란?

▪ "플랫폼"이란 알고리즘 방식으로 거래를 조율하는 일종의 온라인 마켓으로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마켓에서의 거래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이윤을 얻으며, 대표적으로 ①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③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브리프」 제104호(한국노동연구원, 2020. 11.) 1면 참조].

▪ "노무제공플랫폼"이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과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0. 12.) 1면 참조].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사람, 특히 그중에서도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이 아닌,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1면 참조).

> ※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다양한 명칭**
>
> **Q.**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배달기사는 여기에 모두 속하는 건가요?
>
> **A.**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정해진 법령용어가 없어서 각각의 법률에서 필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도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이용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용보험법」 상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하며,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외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포함됩니다.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택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직종과 전업 여부 및 운영형태 등이 다릅니다(「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2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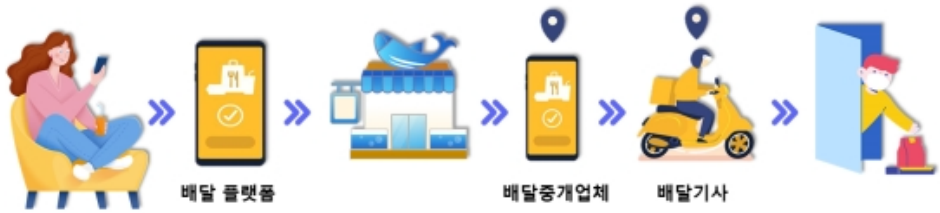
- 배달기사는 수요자의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에 의해 업무가 배당되면 해당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속합니다.

구 분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운영형태	온라인상으로 노무제공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제공 
직종 예시	디자인, 번역, IT 등 전문분야	배달, 가사 등
전업/부업	주로 부업	전업, 부업 혼재
정책 수요	표준계약서 등 법제화,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상담 지원,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등	불공정거래 방지, 표준계약서 등 법제화, 4대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등

배달중개업과 배달앱종사자의 유형

배달중개업의 유형

▪ 기존에는 고객이 음식점에 주문을 넣으면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 배달을 하는 3단계 구조에서, 최근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은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5단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노동리뷰」 2021년 2월호(한국노동연구원, 2021. 2.) 45-46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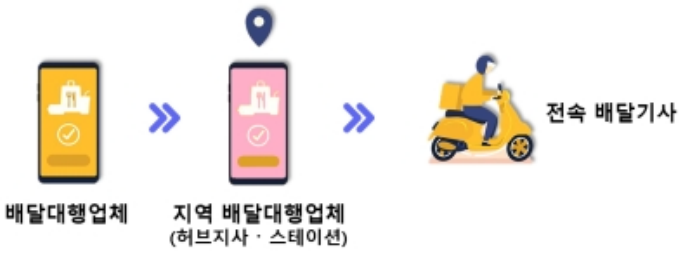


▪ 배달중개업은 유형에 따라 ① 주문과 배달대행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인 통합형과 ② 주문은 고객이 음식점에 직접 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고, 배달은 전국망을 가진 배달대행업체가 앱을 통해 지역배달대행업체에 전달하는 형태인 가맹형으로 구분됩니다(「노동리뷰」 47-52면 참조).

- **[통합형(대도시·수도권)]**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



- **[가맹형(전국망·본사)]**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앱종사자의 유형

▪ 배달앱종사자는 통합형 전속 배달기사와 가맹형 전속 배달기사,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노동리뷰」 47-52면 참조).

- **[통합형 전속 배달기사]**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경우 그 자회사인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의 배달중개업체가 음식점들과는 배달 수수료 계약을, 배달기사들과는 위탁계약을 맺어 음식을 배달합니다.
- **[가맹형 전속 배달기사]**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의 전국망 배달대행업체와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하는 형태로, 가맹형 전속 배달기사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합니다.
-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 동네 배달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개인들에게 배달을 위탁하는 형태로, 배민커넥트가 대표적입니다.

구분		전속 배달기사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	비고
		통합형	가맹형		
근로계약		위탁계약	위탁계약	위탁계약	통합형과 크라우드소싱은 자회사와 위탁계약 가맹형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
노동시간 제한		×	×	△	배민커넥트의 경우 주 20시간으로 한정
노동형태		전업	전업	부업	-
오토바이	사용	O	O	△	-
	대여	△	O	×	배달의 민족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나, 2020년 신규 진입자부터는 유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사용해야 함
수수료 지급방식		건당 수수료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

<출처: 「노동리뷰」 47면 참조>

배달앱종사자의 법적 지위

▪ 배달기사의 경우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종속성, 계속성,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 11.) 및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노무제공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그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구 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개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복리후생 및 퇴직금		O	X
4대 보험	연금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
	건강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미가입자)
	고용	O	2022년 1월부터 적용
	산재	O	2021년 7월부터 적용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을 보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이하 "근로자성"이라 함)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⑤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다만,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배달앱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①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②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고, ③ 근무 시간·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하는 등 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노동부, 배달앱 '***'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 참조).

2. 배달 준비하기

2.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2.1.1. 고용보험 가입하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알아보기

▪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 ※ 고용보험사업 중 대표적인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①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다만,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 사용자 준수사항 – 보험 가입 의무>에서, 그리고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의 <외국국적동포 – 국내활동 – 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제외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 다만,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이중 취득의 제한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 월평균보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함)가 많은 사업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2항·제3항).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배달앱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하기

개인사업자인 경우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후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나목, 제1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Ⅰ).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사업 등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자영업자는 폐업 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 제한 폐업 사유	세부 사유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	-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형법」 상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폐업한 경우
	사기·공갈 및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또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다음의 세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①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폐업 직전년도 또는 직전년도 동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 가능) ③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여서 폐업한 경우 ④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되거나 폐업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인 경우로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30일 이상 간호해야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폐업했을 거라고 인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의 종류(「고용보험법」 제37조 참조)

구 분	종 류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早期)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및 별표 2의4).

구 분		체납 횟수
피보험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1회
	2년 이상~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인 경우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함)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함)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

▪ 이 경우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2항).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지원 신청을 하면,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 및 제4항).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참조)

·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③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또는 그 외 배달원인 사람, ④ 대출 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인 경우), ⑥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⑦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⑧ 가전제품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⑨ 방과후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⑩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⑪ 화물차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의 운송,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의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물류센터 간 화물, 자동차,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사료, 상품, 식자재나 식품 등을 운송하는 사람, ⑫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늘찬배달원**(③에 해당하거나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사람 제외), ⑬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⑭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⑮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⑯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⑰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배달앱종사자는 ⑫에 해당하며,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 노무제공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함)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

▹ 15세 미만인 경우(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이후** 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48호) 부칙 제2조].

▪ 노무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77조의8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다음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 제한 이직 사유	세부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이직 당시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의 “소득감소 인정 기준” 참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최종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하며, 또한 ②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위의 수급자격 제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 단서).

▪ 또한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항).

-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일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일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으로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12호, 2022. 1. 1. 발령·시행) Ⅰ.].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 다만, ① 천재지변, ②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또는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 상담은 각 지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업무담당기관 안내 참조)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1588-0075) 또는 온라인으로[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1.2. 산재보험 가입하기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 알아보기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 본문).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구 분	인정 사유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재해보험 및 보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I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하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

▪ 노무제공자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

※ 노무제공자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③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④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⑤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또는 그 외 배달원, ⑥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늘찬배달원,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⑩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⑪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⑫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⑬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⑭ 화물차주로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⑮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⑯ 방과후학교,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강사, 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배달앱종사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여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배달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판단해야 함에도 배달원을 '9223 음식배달원'으로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전속성 판단기준 폐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앱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개정, 2023. 7. 1. 시행)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관련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되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2. 6. 10. 이후 2023. 7. 1. 사이 보조사업장(주된 사업 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며,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개정, 2023. 7. 1. 시행) 부칙 제1조 및 제8조 참조].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가 각각 50%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기도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0항·제11항).

▹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제4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6제3항 참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전단).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위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후단).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신고·납부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배달앱종사자의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18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 그 밖에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Ⅰ(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 Ⅱ(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시거나 전화문의(☎ 1588-0075)도 가능합니다.

3. 배달하기

3.1. 안전운행하기

3.1.1.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실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 이륜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나, 제17조, 제4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 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③ 배달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및 ④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

▪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제3항·제4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인증혜택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제5항, 제23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 소화물배송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 배달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의 설치·개선
- 소화물배송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 소화물배송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 소화물배송업 관련 교육
- 그 밖에 소화물배송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① 소화물배송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② 관련

국제협력과 ③ 홍보 및 ④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화물배송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정기검증 및 인증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자, 영업점 또는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한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서 요구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자의 자격요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배달앱종사자를 비롯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고 함)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함)을 확인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제1항).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제3항).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종사자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개정, 2024. 7. 17. 시행) 부칙 제4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위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2항).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위의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제9호의2·제9호의3).

-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위의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개정, 2025. 1. 17. 시행) 부칙 제3조].

배달앱종사자 보호 방안

안전한 배달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 사업자는 배달앱종사자를 비롯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관해 노력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 혹서·혹한·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배달앱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8조제2항).

▪ 배달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제78조 및 제175조제4항제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다음의 작업에 따른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 √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 이동통신단말장치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지

▪ 이동통신단말장치(배달앱)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배달앱종사자가 물건을 수거·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제2항).

생활물류 쉼터 등 휴게시설 마련

▪ 사업자는 배달앱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배달앱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휴식 및 복지공간은 물론 운송수단을 정비할 수 있고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지원을 제공하는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시 접근성 및 이동편의,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 충분한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안전한 운행을 위한 권고사항**[「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2020. 12.), 8-10면 참조]

-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배달프로그램(앱) 제작

  · 배달앱종사자 보호구 미착용 또는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프로그램 사용제한 기능 설정,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일정기간 프로그램 사용제한 설정 등

- 배달대행 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 송출 및 법정 주간 근로시간(주 40시간)·법정 주간 연장근로시간(주 52시간) 초과 시 경고 메시지 송출 등

- 주행 중 불안전행동 사전 예방조치

  · 안전운행 방법 및 운행습관 관리·교육 및 이륜자동차 운행 전 각부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일상점검 실시 등

-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구 분	기상상황	배달지역 제한 (최대거리 2㎞ 기준)
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폭우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시간당 15mm 이상, 1일 강수량 110mm 이상, 호우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눈	시간당 20mm 이상, 1일 강수량 180mm 이상, 호우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1.5km 이내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체인(사슬형, 직물형)을 장착한 경우	1.5km 이내
	대설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대설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기타	안개, 연무, 박무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1.5km 이내
	야간운전 시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배달 유도 및 영업소 응급물품·방역물품 지원

공제조합의 설립

▪ 소화물배송업 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조합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

> ※ **공제조합 설립을 향한 한 걸음!**
>
> - 2022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은 12개 주요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참조).
>
> ·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
> ·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 ·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운영 과정 참여**
>
> ·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 · 기타 종사자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 공제조합의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1~4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제2항·제4항).

순번	사업 종류	비 고
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보험업법」 적용되지 않음
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Q.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륜자동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동킥보드로는 배달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는 이륜자동차를 활용한 배달 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외의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화물배송대행업 자체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실상 관련 규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배민커넥트´ 생활물류법 위반 …국토부 "그럴 일 없다" 참조>

3.1.2. 안전운행을 위한 배달앱종사자의 노력

「도로교통법」 준수하기

주행 중 준수사항

▪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보행자 보호하기,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하지 말기 등 「도로교통법」 및 교통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 및 제49조 등 참조).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는 물론 도로에서 운전 시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에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2명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행되는 다음의 차를 말하며,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또는 ② 그 밖에 전기자전거는 제외한,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자전거는 제외한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자전거**"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 그 밖에 자동차 등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련법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수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사용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보험 가입하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

▪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한 경우에는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비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대물배상]**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또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대인배상 Ⅱ]**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이륜자동차 보험**

- 이륜자동차는 운용 목적에 따라 ① 가정용 및 출퇴근용 ② 유상운송 ③ 비유상운송으로 구분되며, 그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의 개념이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 분	보험 적용 대상	보험가격
가정(출퇴근)용	출퇴근용	**낮은 가격 ↕ 높은 가격**
무상운송	자영업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	
유상운송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출처: "늘어나는 배달오토바이 사고, 보험은 어떻게 "(2021. 5.) 참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제3항제2호 및 제48조제3항제1호).

▪ 또한 무보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영치될 수 있으니 적합한 보험에 가입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참조).

※ "영치(領置)"란 소유자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8조 및 제218조 참조).

3.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1.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는?

배달앱종사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의 종속성이 있는 등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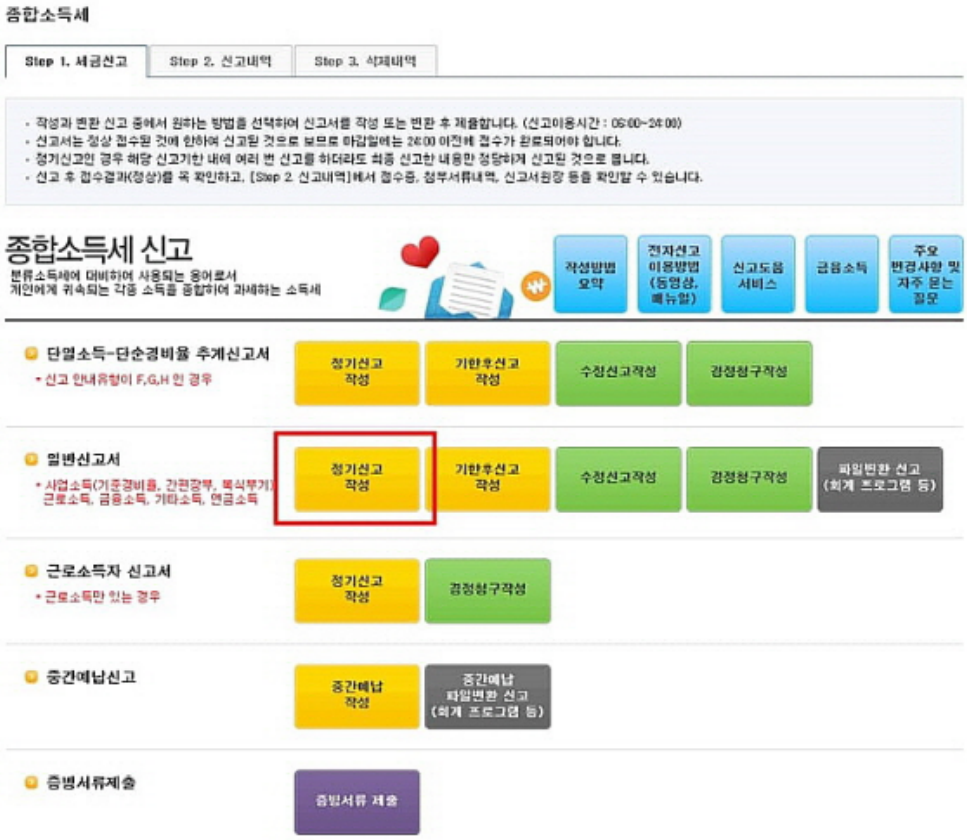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따라서,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신고 및 납부하기



▪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계산한 모두채움 신고(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달 종료 및 분쟁해결

4.1.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1.1.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의 종류 및 절차

실업급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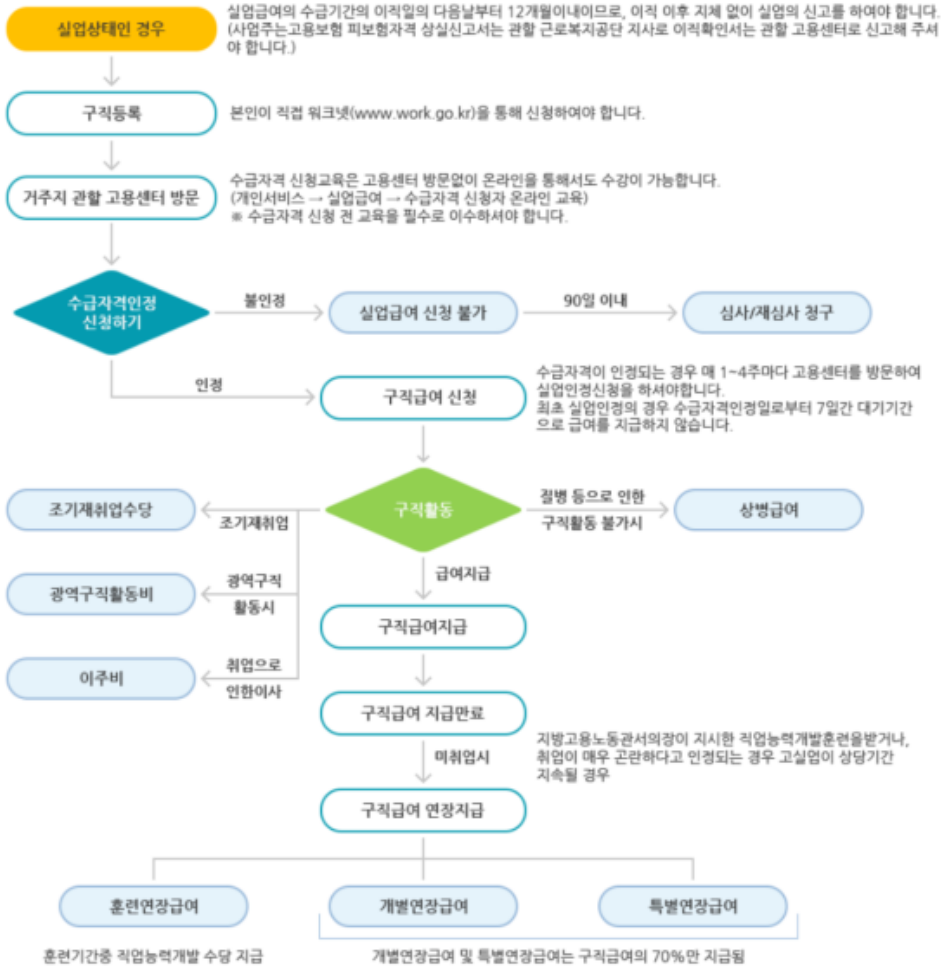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으로는 ① 조기재취업수당,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및 ④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절차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안내 지급절차>

> ※ 그 밖에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급여액 및 지급일수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실업 신고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및 별표 2).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경우

급여액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6만 81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4항).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 본문).

▹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자(단기예술인 이나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함)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 단서).

- "기준보수"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는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 사업의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 단기노무자를 제외하고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의 규모, 근로·노무 형태, 보수·보수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기준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용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 ·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 · 시간급근로자, 일급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 · 예술인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 · 노무제공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급여일수

▪ 노무제공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6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제5항).

▹ 이직 당시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

▹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소득감소 정도	대기기간
30% 이상 ~ 50% 미만	4주
50%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소득감소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주

▪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2항·제7항 본문, 제50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2항·제7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2항).

$$1 - \frac{\text{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월)}}{12\text{개월}} \leqq \frac{\text{근로자 피보험기간(일)}}{180\text{일}} + \frac{\text{예술인 피보험기간(월)}}{9\text{개월}}$$

√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으로 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의 계산식을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104조의15제3항).

구 분	적용 기준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6항)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	피보험기간
11일 이상	1개월로 산정
10일 이하	월별 노무제공일수의 합 / 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전화(☎ 1350) 또는 온라인(www.nhis.or.kr)으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1588-0075) 또는 온라인(total.comwel.or.kr)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2. 각종 분쟁 해결하기

4.2.1.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배달앱 관련 소비자분쟁

배달 중 사고, 배달기사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 배달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 기존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계약서”에 의하면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免

責)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하에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논의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자율적으로 시정했습니다[「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0. 1.) 참조].

-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기 존	변 경
"라이더"는 (생략)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하며, "회사"에게 법적 문제 발생시 "라이더"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라이더"는 (생략)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한다.
재위탁받은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탁자를 면책시키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수탁자는 재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을 위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 불만신고 접수 시 배달기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달기사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명시

기 존	변 경
< 신설 >	단, "라이더"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 또는 불만 신고의 원인 사실이 이용자/업주에 의해 유발된 사안 등은 불만 신고 횟수에서 제외한다.

서비스약관 마련 및 신고

▪ 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함)을 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서비스약관 변경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제7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사업의 종류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 운송장에 관한 사항
-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서비스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제6항).

> ※ **소비자 불만 사례 및 배달앱 이용약관 예시**[「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0. 2. 25.) 참조]
>
>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중 대부분은 미배달·오배달 등의 계약불이행과 취소신청시의 환급지연·거부가 가장 많았는데, 대표적인 3개 배달 플랫폼의 경우 취소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취소 가능한 시간도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한 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업체에 미배달·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취소 가능 시간 보장 및 취소절차 안내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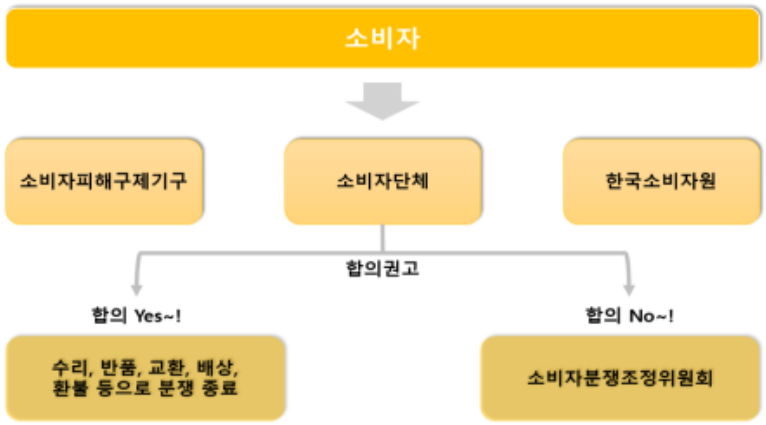
소비자 피해구제방법

직접해결

▸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피해구제기관을 통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을 통한 해결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각 기관은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5조).

법원을 통한 해결

▪ 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기 전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인 ① 소액사건심판, ② 지급명령 또는 ③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 참조).

▪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참조).

>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배달앱종사자의 권리구제

사업자의 의무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해서는 안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4조제1항·제3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이하 “화주”라 함)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 화물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의 상대방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4조제2항·제3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호·제3호).

- 화물 배송을 요청한 자가 소비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물 배송을 요청한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노동자로서의 권리 지키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신청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및 제30조제1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및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또한 진정보다 더 신속한 구제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당사자간 자발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정제도가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진정은 당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해서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www.humanrights.go.kr)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1331)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조정은 진정인이 진정서 접수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을 통한 권리구제

▪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직접 고소·고발하거나(「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민사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위헌여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지만, 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 11.) 참조)].

> ※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조정제도 및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권침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권 되찾기

고용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및 제104조).

- 원처분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하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심사관에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및 제90조제1항).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고용보험법」 제96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4조).

> ※ 고용보험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제도소개-재심사청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함)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 본문).

▹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제106조제2항·제3항).

▪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및 제111조).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보상-심사청구(이의제기)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재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